

학교법인 예수대학교

2022학년도 제 3차 이사회의록

- 회의 소집일 : 2023년 1월 25일
- 개최 일시 : 2023년 2월 7일(화) 오후 18:30
- 장 소 대학본부 2층 회의실
- 개최예배 : 찬송 384장, 성경-디후 4:7-8

기도-이숙재 이사

구분	이사	감사	계
임원 정수	12	2	14
재적 임원	12	1	13
출석 임원	8	0	8
결석 임원	4	1	5

1. 출석현황 :

참석이사	김철승, 정성후, 윤욱희, 이숙재, 김찬기, 이철호, 이병호, 윤용순	8명
결석이사	박성광, 조진웅, 신충식, 이병호	4명
결석감사	김현용	1명
배석자	박용선 사무국장, 배진희 기획처장	2명

2. 안건 :

제 1호 의안	2022학년도 법인 추가경정자금예산 안
제 2호 의안	2022학년도 교비 추가경정자금예산 안
제 3호 의안	2023학년도 법인 자금예산 안
제 4호 의안	2023학년도 교비 자금예산 안
제 5호 의안	정관개정 안
제 6호 의안	법인기금운용심의위원회 법인 위원 추천 안
제 7호 의안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법인 위원 추천 안
제 8호 의안	기타(안)
1.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 지명	

 尹郁姬 76 2023

3.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 이사장이 재적이사 12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4. 전차회의록 접수 :

- 이사장이 전 회의록(2022.12.27)의 처리여부를 묻자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윤용순 이사 동의와 이숙재 이사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5. 회의내용 :

제 1호 의안 : 2022학년도 법인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김철승 이사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박용선 사무국장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법인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설명하다.

- 아 래 -

구 분	금 액	비 고
2022 예산(A)	1,176,200,675원	
2022 추경예산(B)	1,008,302,085원	
증감(C)=(A)-(B)	-167,898,590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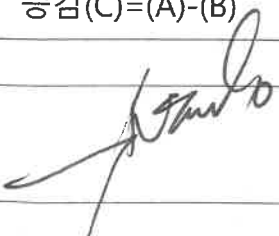
- 논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이철호 이사의 동의와 윤용순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이사 8명 중 8명이 찬성하여, 2022학년도 법인 추가경정자금예산 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2호 의안 : 2022학년도 교비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김철승 이사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배진희 기획처장이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교비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설명하다.

- 아 래 -

구 분	금 액	비 고
2022 예산(A)	7,300,262,910원	
2022 추경예산(B)	7,247,353,727원	
증감(C)=(A)-(B)	-52,909,183원	감소

	尹郁姬	76 조미
---	-----	-------

- 논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이철호 이사의 동의와 이진일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이사 8명 중 8명이 찬성하여, 2022학년도 교비 추가경정자금예산 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3호 의안 : 2023학년도 교비 자금예산(안)

- 김철승 이사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박용선 사무국장 아래와 같이 2023학년도 법인 자금예산(안)을 설명하다.

- 아 래 -

구 분	금 액	비 고
2022 예산(A)	1,008,302,085원	
2023 예산(B)	353,000,000원	
증감(C)=(A)-(B)	-655,302,085원	감소

- 논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윤용순 이사의 동의와 이숙재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이사 8명 중 8명이 찬성하여, 2023학년도 법인 자금예산 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4호 의안 : 2023학년도 교비 자금예산(안)

- 김철승 이사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배진희 기획처장이 아래와 같이 2023학년도 교비 자금예산(안)을 설명하다.

- 아 래 -

구 분	금 액	비 고
2022 예산(A)	7,247,353,727원	
2023 예산(B)	6,559,279,750원	
증감(C)=(A)-(B)	-688,073,977원	감소

- 논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이숙재 이사의 동의와 이철호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이사 8명 중 8명이 찬성하여, 2023학년도 교비 자금예산 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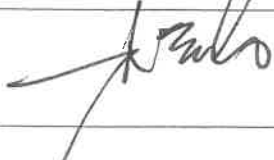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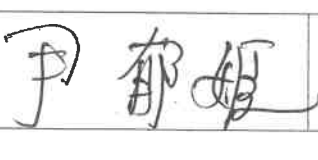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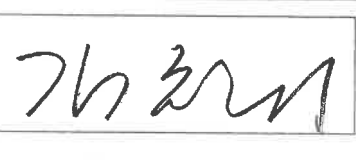
	尹 郁 姬	가 지 미
---	-------	-------

제 5호 의안 : 정관 개정 안

- 김철승 이사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박용선 사무국장이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정관개정안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12조의3 "신설"	12조의3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①이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의하여 법인 및 정관 제3조의 설치학교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기금운용심의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원, 직원, 재학생은 각 2명, 회계 또는 재무관련 외부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④그 밖에 기금 운용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규정에 따른 규정 신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② 이사회를 소집코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② 이사회를 소집코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회의 7일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를 공지해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규정 개정
제69조의 2(총장 직속기관) 총장	제69조의 2(총장 직속기관) 총장은	대학의 직속기관을 학칙에 명시

직속기관으로 교육혁신원, 교 목실, 비서실, IRB사무국을 둔 다.	<u>필요한 경우 직속기관을 둘 수 있다.</u>	하고자 함
제4절 청렴의무 제72조의2 "신설" 제72조의3 "신설"	제4절 청렴의무 제72조의2(청렴의무) 본 법인 이사 장 및 임직원, 대학의 장과 교 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 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 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의3(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제72조의2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규 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 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 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학 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이사장의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 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계·이 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 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립학교법 제72조의4(청렴의무) 및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 령)에 따른 규정 신설

	尹 郁 姬	76321
---	--------------	--------------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학교법인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1.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 논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윤용순 이사의 동의와 이철호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이사 8명 중 8명이 찬성하여, 정관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6호 의안 : 법인기금운용심의위원회 법인 위원 추천

- 김철승 이사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박용선 사무국장이 개정된 정관 제12조의 3에 근거하여 법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에 필요한 법인 위원 추천을 위해 본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설명하다.

- 논의 후 법인기금운용심의위원회 법인 위원으로 이진일 이사, 김찬기 이사, 김현용 감사를 추천하자는 이숙재 이사의 동의와 이철호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이사 8명 중 8명이 찬성하여 법인기금운용심의위원회 법인 위원으로 이진일 이사, 김찬기 이사, 김현용 감사 이상 3명이 추천되었음을 공포하다.

	尹郁姬	76 221
---	-----	--------

제 7호 의안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법인 위원 추천

- 김철승 이사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박용선 사무국장이 정관 제20조의4 및 제21조 제6항에 근거하여 2023.4.24.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정성후 개방이사, 2022.11.14.자로 임기가 종료된 양병철 추천감사의 후보 추천을 위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법인 대표 2명을 추천하기 위하여 본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설명하다.

- 논의 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법인 추천 위원으로 박성광 이사와 김찬기 이사를 추천하자는 이숙재 이사의 동의와 이철호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이사 8명 중 8명이 찬성하여 개방이사후보추천위원회 법인 추천 위원으로 박성광 이사와 김찬기 이사가 추천되었음을 공포하다.

제 8호 의안 : 기타

가.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 지정

- 이사장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거 이사회회의록 간서명자의 추천을 요청하니, 김철승 이사장, 윤육희 이사, 김찬기 이사 이상 3명으로 하자는 이숙재 이사의 동의와 이진일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이사 모두 찬성하여 의결하다.

8. 폐회 선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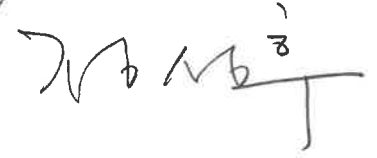
- 이사장이 폐회 성안을 요청하니 이숙재 이사의 동의와 이철호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김철승 이사장의 기도로 폐회를 선언하니 20시 05분이었다.

	尹 郁 姬	76 3 22 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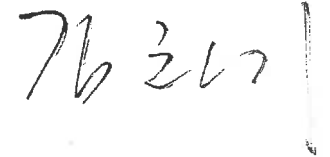
학교법인 예수대학교 이 사 장 김 철 승



이 사 정 성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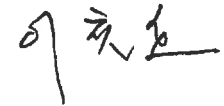


이 사 김 찬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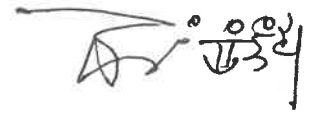


이 사 이 숙 재 이 숙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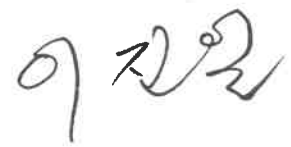
이 사 이 철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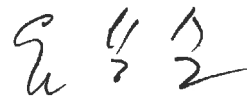
이 사 윤 욱 희



이 사 이 진 일



이 사 윤 용 순



	尹郁姬	76.2.21
---	-----	---------